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,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·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「양식산업발전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,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, 방법 등 마련(안 제24조의2 신설)

- 1)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, 신규인력 진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귀어업인, 후계어업인,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
- 2)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면허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, 신청절차 등을 공고할 것
- 3) 임대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
- 4)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2. ~ 3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등)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
2.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,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,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

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.

1.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
2. 임대료,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
3. 신청기한,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.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「어업·양식업등록령」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24조(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제24조의2(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등)</u>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1.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.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,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
후계어업인, 같은 법 제2조제2
호의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
으로 임대할 것

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
공공기관의 장은 임대하려는 양
식업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
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.

1.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
면허한 사항

2. 임대료, 임대기간 등 임대차
계약에 관한 사항

3. 신청기한, 제출서류 등 신청
절차
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
하는 사항

③ 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차계
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차기
간은 면허의 유효기간(법 17조
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
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
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)이
끝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차계
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공기관
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

협의해야 한다.

⑤ 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
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
체결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
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
한다.

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임
대차계약의 내용을 「어업·양
식업등록령」에 따른 양식업권
원부에 반영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14